I공동교육과정 개요

- 1. 개념
- 2. 추진 근거
- 3. 운영 방법

1. 개념

가. 정의

○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 등을 학교 간, 지역 또는 대학과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

나. 추진 목적

- 학생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따른 수요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운영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및 진로·적성에 맞는 학업 설계 지원
- 단위학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고, 학교 간, 학교-지역 또는 대학, 학교-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력 신장 및 교육 공동체 구축

다. 추진 방향

-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생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과목 개설·운영
- 학교의 과목 개설·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의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학업 설계 실현
- 교과 융합, 블레디드 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우영으로 학습 경험의 혁신 지원
- 학교-교육청-지역·대학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라. 용어 정의

- 강좌: 공동교육과정 과목 운영을 위해 개설하는 개별 수업 단위
- 거점학교: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를 말하며 강좌 운영, NEIS 편제 등록 및 성적 처리 등을 담당
- 참여학교: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소속 학교
- 관리교사: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업무 담당자

- 수업교사(강사):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개설하여 수업하는 교사(강사)
- 협력교사: 강사 채용 시.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 업무(NEIS 등)를 지원하는 교사

2.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제48조(학과 및 학점제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2호(2022.1.17.))
-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12.22.))
 ※ 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3호(2024.8.16.) 일부개정 포함
- Ⅲ.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 4. 고등학교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 1) 공통 사항
- 사)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아) 학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의 선택 과목 이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되, 다음의 각호를 따른다.
- (1)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 시행 2024.3.1.) 제15조 ⓑ항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⑤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예정

-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학기말에 입력한다. (중략)
 - ⑤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은 제4항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되, '석차등급'란에는 '·'을 입력한다.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배부 예정
 - 시도교육청별「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시도교육청별「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3. 운영 방법

가. 운영 방향

- 단위학교에서 미개설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운영하고, 학생과 단위학교의 수요·필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과목 개설·운영
-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정규 일과시간 내 과목 개설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의 수요· 지역 특성·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 일과시간 외(방과 후, 주말) 운영
 - ※ (정규 일과시간)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부터 하교 시각까지의 시간을 의미함
-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간 협의, 강좌 일정 조정 등을 통해 공동교육과정 일정을 학교의 학사 일정과 가급적 동일하게 운영
- 진로와 연계한 심화 학습, 체험·실습 중심의 수업, 교과 융합 수업, 블렌디드 수업 등학생 참여·활동 중심의 공동교육과정 수업 운영

나. 운영 대상

- 소속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
 - 단, 시도교육청 간 협약 시, 타 시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 대상 운영 가능

다. 운영 절차

단계	세부 절차	시기(안)
준비	① 사전 협의 ② 수요 조사 ③ 개설 예정 과목 확정	(학기) 시작 3~4개월 전 (학년) 시작 9~10개월 전
계획	④ 운영 계획 수립 ⑤ 심의 ⑥ 학생 모집 ⑦ 운영 계획 확정	(학기) 시작 1~2개월 전 (학년) 시작 7~8개월 전
운영	⑧ 운영 준비 ⑨ 수업 및 평가 운영 ⑩ 운영 종료	학기 시작 1~2주 전 학기 중 학기 말
보고	⑪ 운영 결과 보고	학기(학년) 말

[※] 학교 간 학사 일정 및 운영 시간 조정 등 차기 학년도 운영 준비와 계획 수립을 위해 '학년'을 주기로 단계별 절차 이행 필요

라. 교육과정 편성·운영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25학년도 2·3학년)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학년 ('25학년도 1학년)을 구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필요

1) 편제 및 학점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교과 및 과목	학점
보통 교과	•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교과의 일반 및 진로 선택 과목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 5±2학점교양 교과목 및 진로 선택 과목: 5±3학점
전문 교과	• 전문 교과ㅣ, 전문 교과॥	
고시 외 과목	• 시도교육감 승인을 받은 과목 ※ 과목 개설을 위한 승인 과정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

	교과 및 과목	학점
보통 교과	•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 /한문/교양 교과의 일반·진로·융합 선택 과목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을 제외한 선택 과목: 4±1학점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 선택 과목: 3±1학점 일부 과목(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생애 설계와 자립): 1~2학점 〈표 6〉특수목적고등학교 선택 과목: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전문 교과	•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선택 과목	
고시 외 과목	• 시도교육감 승인을 받은 과목 ※ 과목 개설을 위한 승인 과정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과목 개설 및 강좌 운영

-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미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 가능
-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학생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참여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강좌 운영 가능
 - 수강생 전원이 거점학교가 아닌 1개 참여학교의 학생인 경우 공동교육과정으로 과목 개설은 가능하나.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유영 여부 결정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학점 수업량은 일반계고 기준(17회)을 동일 적용하여 유영
 -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반계고의 1학점은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나, 직업계고는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임.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모두 16회로 동일함.

3) 과목 편성

- 학기 단위로 편성하고, 과목 편성 시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편성
 - ※ 여름방학 계절수업은 1학기, 겨울방학 계절수업은 2학기로 편성·운영

4) 강좌 운영 일정

○ 매 학기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일정을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학사 일정과 가급적 동일하게 운영

5) 수업 시간

○ 정규 일과시간 내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정규 일과시가 외(평일 방과 후, 주말) 운영 가능

6) 수업 방법

-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대면 수업,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으로 운영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도 운영 가능
 - ※ 교실온닷(https://classon.kr)을 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타 플랫폼 활용 가능

7) 수업교사(강사)

- 교사(강사) 자격
 - 중등 교원 중 해당 교과 자격 소지자(교과 순회교사 포함)
 - 개설 과목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
 - ※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강사) 자격의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청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르며, 수업교사(강사)의 자녀가 해당 강좌를 수강하지 않도록 제한함
- 공동교육과정 수업 운영을 위해 강사 채용 시,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 업무(NEIS 등)를 지원하는 협력교사 지정
 - ※ 시도교육청 및 학교 내 협의를 통해 협력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 예) 학교 내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으로 강사를 지원하는 별도의 시간 확보 등

8) 강좌별 수강 인원

-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준용하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업 참여 활성화 등 수업의 질 관리를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 강좌별 수강 인원 중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간 학생 비율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및 학습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9) 학기당 최대 수강 과목 수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 강좌의 학생 1인당 수강 학점 수는 학기당 최대 6학점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소속학교의 총 이수학점 외 학점 증배 취득 시, 학생 1인당 이수 가능 학점을 의미
 - 정규 일과시간 내 개설 강좌는 학기당 최대 수강 학점 수 제한 범위에 불포함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 정규 일과시간 내외 구분 없이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학기당 최대 2개 이내로 이수 가능
 - 다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등 부득이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학기당 3개 이상 과목 수강 가능

10) 수강 대상자 선정

- 신청 인원수가 모집 인원수를 초과할 경우, 동일 과목의 강좌를 추가 개설할 필요가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거점학교 또는 교육청의 수강생 선정 관련 기준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
 - 수강 학생 모집 전 수강생 선정 관련 기준 마련 및 사전 공지 필요 ※ 필요시 자기소개서, 진로·학업 설계서, 면접,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선정

마. 출결 관리 및 이수 기준

1) 출결 관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 시행 2024.3.1.) [별표8] '출결상황 관리'및 거점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
 - ※ (참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예정
 - 출결상황 관리에 기재된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고 참여학교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출석 인정 증빙서류 보관 연한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준수
- 거점학교와 소속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상황 관리 및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의 경우 과목출석률(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 출석)이 과목 이수 여부의 기준이 되므로 학생 출결 상황을 엄격하게 관리

2) 이수 기준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구분	이수 기준
정규 일과시간 내 개설 과목	소속학교의 출결과 합산하여 관리하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기준 동일 적용 ※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 시 졸업 가능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 과목	수업일수는 수업시수로 대체하여 적용하고, 수업시수의 2/3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

구분	이수 기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는 모든 과목	• 학점 이수 인정 기준 적용 - 인정 기준: 과목출석률(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충족 시 이수 인정 ※ 교양 교과 내 과목은 과목출석률 기준만 적용

[※] 이수 기준 미도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학업성취율은 충족했으나 출석률이 미도달한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교양과목 포함)

바. 평가 방법

1) 평가 계획 수립

- 평가 계획 수립 시「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 시행 2024.3.1.), 시도교육청별「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및 거점학교「학업성적 관리 규정」준수
 - 단, 시도교육청 간 협약을 통한 운영 시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내. 해당 공동교육과정의 평가 관련 지침 수립 필요
- 평가 계획은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2) 평가 운영

- 지필평가 시행 일정, 방법 등은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담당자, 수업교사(강사), 협력 교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참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
-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또는 대면 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하여 평가

사. 성적 처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 시행 2024.3.1.)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은 교과(군)별 성취도 5단계 또는 3단계, 이수여부(P)로 평가하며, 상대평가 석차등급 미산출
- ⑤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은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예정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다음의 교과(목)는 예외로 하여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한다.

- 1. 보통 교과 사회·과학 교과(군)의 융합 선택 과목('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과',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
- 2. 보통 교과 공통 과목의 '과학탐구실험' 및 체육·예술 교과(군)의 과목(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 제외): '교과', '과목', '학점', '성취도'
- 3. 보통 교과 교양 교과(군)의 과목: '교과', '과목', '학점', '이수여부'
-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과목 개설 유형(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과목 이수 상황(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 미이수, 대체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중략)
- ⑤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은 제4항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되, '석차등급'란에는 '·'을 입력한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 시행 2024.3.1.)의 수강자수 산출 기준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과목 수강 확정 이후에는 전체 수강 인원에 미이수 또는 중도 포기 학생을 포함하여 성적 산출
 - 공동교육과정 수강 인원 확정 및 수강신청 변경 기간을 명시하여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 필요
 - ※ [별표 9]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가)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32p)

- 거) 공동교육과정 성적처리 방식
- (1) 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한다(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포함), 특성화고등학교 등)

\prod

공동교육과정 운영 과정

- 1. 준비
- 2. 계획
- 3. 운영
- 4. 보고

〈공동교육과정 운영 절차〉

단계	세부 절차	주요 내용	시기
	① 사전 협의	• 학교 내 협의 • 학교 간 협의	(학기) 시작
준비	② 수요 조사	교사 수요조사 학생 수요조사 수요조사 결과 처리	3~4개월 전 (학년) 시작
	③ 개설 예정 과목 확정	개설 가능 과목 결정 수업교사(강사) 선정	9~10개월 전
	④ 운영 계획 수립	 운영 계획 협의 수업 계획 수립 평가 계획 수립 예산 집행 계획 수립 	(515) 1151
	⑤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기) 시작 1~2개월 전
계획	⑥ 학생 모집	모집요강 및 수강신청 안내 학생 수강 신청 수강 대상자 선정 및 개설 과목 확정 수강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학년) 시작 7~8개월 전
	⑦ 운영 계획 확정	운영 계획서 제출 수업 개설 정보 입력	
	® 운영 준비	• 강의실 확보 및 필요 물품 구매 • NEIS 처리(수강생 등록) •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학기 시작 1~2주 전
운영	⑨ 수업 및 평가 운영	수업 운영출결 관리평가 운영성적 처리	학기 중
	⑩ 운영 종료	만족도 조사종강 및 수료식NEIS 처리(운영 결과)	학기 말
보고	⑪ 운영 결과 보고	•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학기(학년) 말

[※] 학교 간 학사 일정 및 운영 시간 조정 등 차기 학년도 운영 준비와 계획 수립을 위해 '학년'을 주기로 단계별 절차 이행 필요

1. 준비

가. 사전 협의

학교 내 및 학교 간 협의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공유하고,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四 세부 절차

세부 절차	주요 내용
학교 내 협의	• 공동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방법 안내 •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직원 협의
학교 간 협의	• 학교-학교 또는 학교-교육(지원)청 간 협의체 구성 • 다양한 과목 개설 및 운영 가능성 모색 • 공동교육과정 운영 관련 정보 공유 • 학교 간 학사일정 조정

1) 학교 내 협의

- 전체 교직원 회의 또는 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방법 안내 및 공감대 형성 유도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개설 가능 과목 검토

라 학교 내 협의 시 고려사항

- 학교 특성,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 및 진로·진학 희망,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 다양한 교육 환경 요소 검토
- 교사 수급 및 학교 시설, 수강 인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의 현황 파악 등

참고 공동교육과정 관련 업무 분장 예시



- 교감: 운영 총괄, 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 담당부장 및 관리교사
- 공동교육과정 안내, 관련 회의 자료 제시 및 회의 결과 정리
-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정리, 공문 처리
- 공동교육과정 운영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결과 보고
- 학생 수강 신청 시 선 이수 과목 이수 여부 확인, 학생 수업 참여 안내 및 학습 도움, 공동교육 과정 관련 물품 관리
- 공동교육과정 교무학사 관리, 학교 간 NEIS 처리 등
- 학급 담임: 학생(학부모) 대상 공동교육과정 안내 및 수요조사 등
-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강사): 수업 및 평가 운영 계획 수립, 학생 출결 관리 및 생활지도, 수업 운영, 평가 시행 및 성적 처리 등
- 협력교사: 강사 채용 시,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업무(NEIS 등) 지원

2) 학교 간 협의

- 학교-학교 또는 학교-교육(지원)청 간 협의체 구성 및 회의 정례화
- 학생 수요에 기반을 둔 다양한 과목 개설 가능성 모색
- 공동교육과정 운영 관련 정보 공유, 학교 간 학사일정 조정 등

학교 간 협의 시 고려사항

- 수업 시간 지정(특정 요일·시간 활용) 등 학교 간 학사일정 조정을 통해 정규 일과시간 내 운영 방안 모색
- 1학기 시작을 위해 직전 학기 및 방학 중에 과목 개설과 수강 신청을 완료하는 방안 마련
-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 정보(교육과정 편제표, 학사 일정표 등) 공유 및 교육과정 위계성 고려
- 학생 이동 거리 및 교통 편의성, 교육자원 공유 방안 등 학습 환경 검토
- 학생 이동 시 안전 지도 및 생활지도, 학생 이동 지원 방안 협의 등

나. 수요조사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강좌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한다.

四 세부 절차

세부 절차	주요 내용
교사 수요조사	• 교사 개설 희망 강좌 조사
학생 수요조사	• 학생 수강 희망 강좌 조사
수요조사 결과 처리	• 교사 및 학생 수요조사 결과 취합 • 교사 및 학생 수요조사 결과 공유

1) 교사 및 학생 대상 수요조사

- 공동교육과정 참여 희망 교사(강사)를 대상으로 개설 희망 강좌 조사
- 학생(학부모)을 대상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취지와 방향, 공동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수강 희망 강좌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라 학생 수요조사 시 유의사항

- 〈과목선택 안내서〉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 및 학업성취 수준에 맞는 과목을 희망하도록 안내
- 학기당 최대 수강 학점 수(또는 학기당 최대 이수 과목 수), 과목 이수 기준, 성적산출 방법, 수강 신청 정정 기간 등에 대한 상세 안내를 통해 학생(학부모)이 공동교육과정 관련 정보를 숙지하도록 지원

2) 수요조사 결과 처리

○ 교사 개설 희망 강좌 및 학생 수강 희망 강좌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학교-학교 또는 학교-교육(지원)청 간 결과 공유

다. 개설 예정 과목 확정

교사 및 학생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설 가능 과목을 결정하고, 수업교사(강사)를 선정한다.

四 세부 절차

세부 절차	주요 내용
개설 가능 과목 결정	수요조사 결과 분석 개설 가능 과목 검토
수업교사(강사) 선정	• 개설 가능 과목 담당 수업교사(강사) 선정

1) 개설 가능 과목 결정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개설 가능 과목 결정
 - 교사 및 학생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설 가능 과목을 검토하되, 과목 개설 및 강좌 운영 요건 준수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및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

- 학교 내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미개설된 과목을 개설
-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학생을 통합하여 운영하되,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참여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강좌 운영 가능
 - ※ 수강생 전원이 거점학교가 아닌 1개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도 공동교육과정으로 과목 개설이 가능하나,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필요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1학점 수업량은 일반고 기준(17회)을 동일 적용하여 운영
- 동일 학기에 동일 과목의 강좌를 여러 유형(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타 거점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각 유형의 강좌를 학교별로 분리 개설 필요
- 여름방학 계절수업은 1학기, 겨울방학 계절수업은 2학기로 편성·운영
- 시도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강좌별 수강 인원 등 관련 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공동교육과정 NEIS 과목 개설·편성 시 유의 사항

•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간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시 유의 사항

구분	과목 개설 시 유의 사항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전문교과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보통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고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계열학과 간 전문교과 II 과목을 공동교육 과정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전문교과 II' 과목으로 편성하고 전문교과 II 과목의 성적 산출 방식에 따라 처리
2022 개정 교육과정	• 일반고와 특목고(또는 특성화고)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특목고용 보통 교과는 과목 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전문교과는 특성화고(거점학교)에서 개설되는 경우에는 전문교과로 편성

-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이 다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 시, 일반고 학생의 수강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거점학교의 유형'을 기준으로 편성함.
 - 예) 특성화고(거점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전문교과 내 과목을 일반고 학생이 수강할 경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보통교과 내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고 학생의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특성화고의 유형에 따라 '전문교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

2) 수업교사(강사) 선정

- 현직 교원을 수업교사로 선정할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운영 가능
- 타교 소속 교사를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로 선정할 경우. 겸임 처리 등을 통해 담당 과목 운영을 위한 나이스 권한 부여
- 강사 채용 시.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 업무(NEIS 등)를 지원하는 협력교사 지정

교사(강사) 선정 시 유의사항

- 교사(강사) 자격
 - 중등 교원 중 해당 교과 자격 소지자(교과 순회교사 포함)
 - 개설 과목에 대한 강사 채용 요건을 갖춘 자*
 - * 시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하며, 교사(강사) 선정 시 수업교사(강사)의 자녀가 해당 강좌를 수강하지 않도록 제한
- 수업교사 지원
 - 단위학교 총 이수 학점 내에서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담당 교사의 수업 시수에 공동교육 과정 수업 시수 포함
 - 단위학교 총 이수 학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시도교육청 및 학교 내 협의를 통해 수업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
 - * (예)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의 가점 요소로 반영, 업무 조정을 통해 담당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 확보 등
- 시도교육청 및 학교 내 협의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협력교사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 (예) 학교 내 협의를 통한 업무 조정으로 강사를 지원하는 별도의 시간 확보 등

2. 계획

가. 운영 계획 수립

과목의 특성을 살린 수업 및 평가 계획과 수업에 필요한 교재, 교구 등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四 세부 절차

세부 절차	주요 내용
운영 계획 협의	• 과목별 운영 계획 협의 • 공동교육과정 과목별 시간표 편성
수업 계획 수립	과목별 수업 계획 협의 과목별 수업 계획서 작성
평가 계획 수립	과목별 평가 계획 협의 과목별 평가 계획서 작성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집행 계획 수립	수업 운영 물품(교재, 교구 등) 구입 계획 협의 예산 집행 계획서 작성

1) 운영 계획 협의

○ 학점 수, 수업 시간, 대상 학년, 강좌별 수강 인원, 수강 대상자 선정 기준, 운영 유형(온라인/오프라인/온·오프라인 연계) 등 협의

[+] 강좌별 수강 인원 결정 시 유의사항

-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내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업 참여 활성화 등 수업의 질 관리를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 강좌별 수강 인원 중 거점학교와 참여학교 간 학생 비율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및 학습 기회가 고르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2) 수업 계획 수립

○ 각 학교의 학사 일정(정기고사 등)을 고려한 차시별 수업 일정 및 지도 계획, 교과와 연계한 체험형 학습 등 수업 운영 계획 수립

3) 평가 계획 수립

- 평가 계획은 시도교육청별「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및 거점학교「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단, 시도교육청 간 협약을 통한 운영 시 시도교육청별「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내. 해당 공동교육과정의 평가 관련 지침 수립 필요
- 평가 계획은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명가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단,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 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 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거점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 준수
- 평가 방법(지필/수행, 영역, 요소, 내용, 방법, 시기, 횟수, 반영비율) 및 평가 기준 등에 대해 담당자* 가 사전 혐의 후. 평가 계획서 작성
 - *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관리교사, 거점학교 성적담당교사,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강사), 협력교사 등

4) 예산 집행 계획 수립

 수업교사(강사) 또는 거점학교 관리교사는 학교 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공동교육과정 수업 운영에 필요한 교재, 교구 등 수업 운영 물품 구입 관련 예산 집행 계획서 작성

말는 예산 집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운용 기준 등은 시도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집행 계획 수립
 - 공동교육과정 사업비 운용 기간 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

나. 심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四 세부 절차

세부 절차	주요 내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한 심의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운영 개요, 담당 교사(강사), 강사료, 교과서 선정, 예산 집행 계획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진행
 - ※ 심의 시기는 시도교육청 및 거점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가능

다. 학생 모집

공동교육과정 모집 요강 및 수강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 수강 신청 진행, 수강 대상자 선정 및 개설 과목을 확정하고, 결과를 안내한다.

💯 세부 절차

세부 절차	주요 내용
모집요강 및 수강 신청 안내	• 모집요강 작성 및 안내 •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안내
학생 수강 신청	• 수강 희망 과목에 대한 수강 신청
수강 대상자 선정 및 개설 과목 확정	수강 신청한 학생 중 최종 수강 대상자 선정 최종 개설 과목 확정
선정 결과 안내	• 수강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학생 및 참여학교)

1) 모집 요강 및 수강 신청 안내

- 모집 요강은 운영 개요, 수강 신청 일정 및 방법, 이수 기준, 수강생 선정 관련 규정, 기타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내
 - ※ (운영 개요) 과목명, 운영 일정, 수업 시간 및 장소, 모집 대상 및 인원, 지원 자격, 수업 및 평가 운영 방법, 문의처 등 포함
- 최종 수강 대상자 선정 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 권장
 - 공동교육과정 수강 인원 확정 및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을 명시하여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 필요
 - 학교 간 공문 시행, 학교 홈페이지, 교실온닷 교육포털, 시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안내

2) 학생 수강 신청

-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에 편제되지 않았거나, 학생 수요 부족 등으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인 경우 신청 가능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타 과목과 시간표가 겹쳐 수강하지 못한 과목, 이수 시기를 놓쳐 수강하지 못한 과목 등)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판단 여부는 담임교사 상담, 학부모 확인,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승인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결정

학생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군)의 선택 과목 이수 전에 이수 필요
- 위계성을 갖는 과목(Ⅰ, Ⅱ로 표시된 과목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 이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과목 중복이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수강신청 변경 기간 외 중도 포기 시 불이익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후 신청
- 학점 초과 이수 제한 기준 준수

구분	학점 초과 이수 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초 교과 영역(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이수 학점이 총 교과 이수 학점의 50% 초과 불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이수 학점 총합이 81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수 학점의 50% 초과 불가

• 과목 이수 제한 기준 준수

구분	과목 이수 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 강좌의 학생 1인당 수강 학점 수는 학기당 최대 6학점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정규 일과시간 내 개설 강좌는 학기당 최대 수강 학점 수 제한 범위에 불포함	
2022 개정 교육과정	정규 일과시간 내외 구분 없이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학기당 최대 2개 이내로 이수 가능 - 다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등 부득이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학기당 3개 이상 과목 수강 가능	

• [특목고, 특성화고] 학점 초과 이수 제한 기준 예외 적용

구분	과목 이수 제한
2015 71174	일반고와 특목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기준 이수학점보다 증배하여 이수 하고자 하는 경우, 특목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통교과(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된 전문교과 포함)를 증배하여 이수 가능
2015 개정 교육과정	※ (원칙)「(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4. 고등학교-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1) 공통 사항 카)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학점을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단,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의 과목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
	일반고와 특목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간에 공동교육과정으로 초과 이수하는 경우, 특목고는 특목고 선택 과목에 한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는 전문 교과의 과목에 한하여 초과 이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2022 개정 교육과정	※ (원칙)「(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4. 고등학교-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1) 공통 사항 바) 학교는 학생의 필요와 학업 부담을 고려하여 교과(군) 총 이수 학점을 초과 이수하는 학점이 적정화되도록 하며,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한하여,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의 과목에 한하여 초과 이수할 수 있다.

참고 학생 수강 신청 플랫폼



- 교실온닷(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육포털
 ※ 학생 수강 신청 전, 교실온닷 내 수업 개설 신청 및 승인 완료 필요
- 시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관련 사이트
- 나이스 플러스(NEIS+)

3) 수강 대상자 선정 및 개설 과목 확정

- 신청 인원수가 모집 인원 수를 초과할 경우, 동일 과목의 강좌를 추가 개설할 필요가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거점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수강생 선정 관련 기준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정
 - 수강 학생 모집 전 수강생 선정 관련 기준 마련 및 사전 공지 필요

참고 수강 대상자 선정 기준 예시



- 필요시 자기소개서, 진로·학업 설계서, 면접, 학생(학부모)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정
 - (예) 진로와 연계한 학업 설계를 토대로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 농·어촌, 구도심 등 교육 소외지역 학생 소규모학교 소속 학생 등
 -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확정
 - 최소 수강 인원 미충족 등 폐강 대상 강좌는 재공고를 통해 추가 모집이 가능 하며,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관련 내용 준수

4) 수강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최종 개설 강좌 목록 및 수강 대상자를 학생과 참여학교에 안내

라. 운영 계획 확정

개설 확정된 과목에 대한 최종 운영 계획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고, 수업 개설 정보를 입력한다.

四 세부 절차

세부 절차	주요 내용
운영 계획서 제출	• 개설 확정된 과목에 대한 최종 운영 계획서 제출
수업 개설 정보 입력	• 교실온닷 교육포털에 수업교사(강사)가 입력(권장) ※ 나이스 교육기본통계에 관련 정보 입력(4, 10월)

1) 운영 계획서 제출

- 개설 확정된 과목에 대한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하여 공동교육과정 최종 운영 계획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 수강 대상자 명단 포함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시도교육청별 작성 요령 참고

2) 수업 개설 정보 입력

- 공동교육과정 수업교사(강사)가 교실온닷에 수업 개설 정보를 입력하여 활용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 개설 및 학생 수강 신청을 교실온닷에서 진행한 경우 입력 불필요
 - 타 플랫폼을 활용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및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입력
-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나이스 교육기본통계에 관련 정보 입력 필요([부록] 4.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작성 방법 참고)

3. 운영

가. 운영 준비

수업 운영에 앞서 강의실 확보 및 교재·교구 등 운영 물품을 구매하고, 공동교육과정 관련 학교 간 NEIS 처리,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등을 실시한다.

四 세부 절차

세부 절차	주요 내용
강의실 확보 및 운영 물품 구매	• 개설 과목별 강의실 확보 • 교재·교구 등 운영 물품 구매
NEIS 처리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타교(공동교육과정) 수강생 처리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 개강식 일정 안내 •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1) 강의실 확보 및 운영 물품 구매

- 교과 특성 및 과목별 교수·학습 방법에 최적화된 강의실 확보
 - 실험 및 실습, 모둠 활동, 프로젝트 수업, 플립 러닝,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등 수업 유영 특성 고려
 - ※ 정규 일과시간 내 운영하는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타교 수강생 이동 시간=공강'인 본교 수강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학습 활동 계획, 수강 학생 수,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재·교구 등 수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2) NEIS 처리

- [거점학교] 공동교육과정 과목 개설 및 타교수강생 관리 등
- [참여학교] 공동교육과정 수강생 확인 요청 접수 및 전송 등

3)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 개강식 일정 및 장소, 대상 명단 등을 학생과 참여학교에 사전 안내
- 수업 및 평가 계획, 출결 관리 및 학생 생활 규정, 과목 이수 기준, 성적 처리, 학생 안전 및 생활 지도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개강식은 생략 가능하며, 강좌별 수업 운영 일정에 따라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실시

나. 수업 및 평가 운영

사전에 수립된 과목별 수업 및 평가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성적을 처리한다.

四 세부 절차

세부 절차	주요 내용
수업 운영	• 과목별 수업 계획에 따라 운영
출결 관리	• 출결 관련 지침 및 규정 확인 •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출결 관리 업무 수행
평가 운영	• 과목별 평가 계획에 따라 운영
성적 처리	• 성적처리 관련 지침 및 규정 확인 •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성적 처리 업무 수행

1) 수업 운영

- 과목별 수업 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수업 일정 변경 시 학생들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사항 안내
- 교과 목표 및 학습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 참여·활동 중심 수업, 블렌디드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구안 및 적용

2) 출결 관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 시행 2024.3.1.) [별표8] '출결 상황 관리'및 거점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
 - ※ (참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예정
 - 출결상황 관리에 기재된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고 참여학교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출석 인정 증빙서류 보관 연한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주수
 -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원격수업과 달리 사후 과제 제출에 의한 출석 인정이 없음에 주의

출결 관리 시 유의사항

- 거점학교와 소속학교에서는 학생의 출결 상황 관리 및 지도 철저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 과목출석률(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 출석)이 과목 이수 여부의 기준이 되므로 학생 출결 상황을 엄격하게 관리
- 수업교사(강사)는 학생의 일출결 상황을 NEIS에 등록하여 거점학교로 전송하고, 거점학교 관리교사 및 담임교사는 학생의 NEIS 일출결 상황 확인·관리
 - 다만,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 강좌의 출결 상황은 학교 간 상황을 고려하여 NEIS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학생 출석부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과목 이수 자료로 활용

참고 출석 인정 사유 예시



- 출석 인정 사유
 - 거점학교 출결 인정에 따른 가족, 친인척 상고
 -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대회, 체험학습 등) 기간에 공동교육과정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 소속 학교 정기고사 기간에 공동교육과정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 소속 학교의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 참가
 - 법정 감염병에 의한 결석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 등
- 출석 인정 불가 사유
 - 출석 인정 증빙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소속 학교의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대비
 - 질병, 기타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 등

3) 평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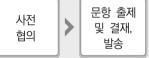
○ 과목별 평가 계획에 따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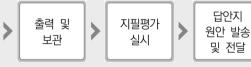
명가 운영 시 유의사항

- 지필평가 시행 일정, 방법 등은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담당자, 수업교사(강사), 협력교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참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
- 지필평가는 등교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행평가는 원격수업 또는 대면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하여 평가
 - 공동교육과정 지필평가는 거점학교의 평가 계획 및 시행 방법에 따라 동일한 일시에 한곳에 모여 실시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시험장 분리 운영 가능

거점학교-참여학교 간 시험장 분리 운영 절차(예시)







- 1) 사전협의: 지필평가 시행 시기는 수업교사(강사), 협력교사가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학생에게 안내하여 강좌별로 동일한 일시에 진행한다.
- 2) 문항 출제 및 결재, 발송: 수업교사(강사), 협력교사는 지필평가 문항을 출제한 후 문항 정보표, 출제 원안지, 수강 학생 명단, 답안지 양식을 거점학교 겸임 권한으로 기안한다. 이때 기안문서는 열람 제한을 설정하고 원안지와 문항 정보표는 암호화하여 첨부한다. 참여학교를 수신자로 설정하여 거점학교 결재가 완료되면 참여학교로 발송한다.
- 3) 출력 및 보관: 결재된 원안지와 문항 정보표는 거점학교에서 출력하여 보관하고, 결재란에는 '내부결재 완결'이라고 표시한다.
- 4) 지필평가 실시: 참여학교 관리교사는 시험 일정에 맞춰 응시 인원, 시험 시간, 시험실, 감독 교사 등이 포함된 지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지필평가를 진행한다.
- 5) 답안지 원안 발송, 전달: 참여학교 관리교사는 평가 후 학생의 답안지를 스캔하고 파일을 암호화하여 거점학교에 열람 제한 공문으로 발송한다. 또한 학생 답안지 원본은 강좌별로 분류하여 거점학교 관리 교사에게 인편으로 전달한다.
- 6) 채점 및 자료 전달: 수업교사(강사), 협력교사는 스캔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바탕으로 채점을 진행한 후 결과를 나이스에 입력한다. 채점 자료는 스캔하여 열람 제한으로 내부 결재 처리하고 채점 자료 원본은 거점학교 관리교사에게 인편으로 전달한다.
- 7) 기타 위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477호 제15조 및 [별표9]에 따른다.

4) 성적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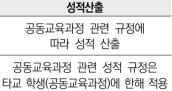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 시행 2024.3.1.) [별표9] '교과학습 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근거하여 처리
 - ※ (참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예정

성적 처리 시 유의 사항

구분	715	일이 서저 처리 바시		
TE	과목의 성적 처리 방식 •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은 '교과', '과목', '학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 단, 진로 선택 과목(진로 선택으로 편성된 전문 교과 포함), 체육· 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교양 교과(군)의 과목은 해당 교과(과목)의 산출방식을 따름			
	교과	입력 내용	성취도	
2015 개정	기초/탐구/생활·교양 (교양 교과(군) 제외) 일반 선택 과목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5단계	
2015 개성 교육과정	체육·예술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	성취도	3단계	
	교양 교과(군)	성취도	Р	
	진로 선택 과목 (일반고 개설 전문 교과ㅣ, ॥ 포함, 교양 교과(군) 제외)	원점수/과목평균(성취도별 분포비율), 성취도(수강자수)	3단계	
	전문 교과॥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5단계	
		언학교 개설 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은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		
	교과	입력 내용	성취도	
2022 개정 교육과정	보통교과, 전문교과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석차등급, 수강자수	5단계	
	보통교과 사회·과학 교과(군)의 융합 선택 9개 과목	학점,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자수	5단계	
		학점, 성취도	3단계	
	'과학탐구실험'			

-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의 '석차등급'란은 공란으로 두며, '비고'란에는 자동으로 '공동'으로 표시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의 '석차등급'란은 '·'을 입력하며, '비고'란에는 과목 개설 유형(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
- 본교(거점학교) 학생과 타교 학생(공동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과목이라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별도로 성적 선출 가능

구분	과목(강좌) 개설			
본교-타교 학생 미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	
본교-타교 학생 구분 운영	본교(거점학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아님)	타교 학생 (공동교육과정 해당)		E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제477호, 시행 2024.3.1.) [별표 의의 수강자 수산출 기준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과목 수강 확정 이후에는 전체 수강 인원에 미이수 또는 중도 포기 학생을 포함하여 성적 산출
 - 공동교육과정 수강 인원 확정 및 수강신청 변경 기간을 명시하여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 필요

5) 과목 이수 처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점 이수 인정 기준〉에 근거하여 과목 이수 처리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실시

참고 과목 이수 기준



	구분	과목 이수 기준
2015 개정		 정규 일과시간 내 개설 과목: 소속학교의 출결과 합산하여 관리하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기준 동일 적용(※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 시 졸업 가능)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 과목: 수업일수는 수업시수로 대체하여 적용하고, 수업시수의 2/3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2022 개정 교육과정	• 과목출석률(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충족 시 이수 인정(※ 교양 교과 내 과목은 과목출석률 기준만 적용)
※ 이수 기준과 성적 처리 유무는 다르며, 이수 기준에 미도달하여도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 경우(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 '수강자 수'에 포함하여 성적 산출		

- 이수 기준 미도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
 - 학업성취율은 충족했으나 출석률이 미도달한 경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통해 학점 취득 기회 제공(교양과목 포함)
 - ※ (2025학년도 이후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계획)(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4.9.12.)의 세부 내용 참고

다. 운영 종료

공동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종강 및 수료식 개최, 학교 간 NEIS 처리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마무리한다.

四 세부 절차

세부 절차	주요 내용
만족도 조사	• 학생, 학부모, 교사(강사)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종강 및 수료식	• 교육(지원)청별/학교별/과목(강좌)별 개최
NEIS 처리	 운영 결과 전송(거점학교 → 참여학교) 전송 내용 확인 및 반영(참여학교)

1) 만족도 조사

-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 교사(강사) 대상으로 학기별로 만족도 조사 실시(온라인 가능)
 -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

2) 종강 및 수료식

-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수료식 개최
 - 교육(지원)청 및 학교 단위 또는 과목(강좌)별로 실시 가능하며, 필요시 과목 수료증 수여

3) NEIS 처리

- [거점학교] 수업 운영 결과를 참여학교로 전송(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 ※ 과목 이수 여부, 성적 산출 결과,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생활 등
- [참여학교] 거점학교에서 전송한 자료 확인 및 반영(공동교육과정관리)

4. 보고

가. 운영 결과 보고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한다.

四 세부 절차

세부 절차	주요 내용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공동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운영 결과 보고서 제출

○ 시도교육청별 제출 양식에 따라 공동교육과정 운영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IV FAQ

- 1. 공동교육과정 FAQ
 - 2. NEIS FAQ

1. 공동교육과정 FAO



🗐 (Q1) 공동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요?

>>>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 곤란 등으로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 등을 학교 간, 지역 또는 대학과 연계·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 😡) 공동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는 어떻게 다른가요?

>>>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타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강하는 정규교육과정입니다.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을 중심으로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 수업 이외의 보충 학습인 방과후학교와는 다릅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내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출결 관리. 평가 및 성적 산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과후학교와 차이가 있습니다.

|≧太「Q3 | 공동교육과정에서 강좌란 무엇인가요?

>>> 공동교육과정 과목 운영을 위해 개설하는 개별 수업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학 과목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 교육학A, 교육학B, 교육학C로 분반하여 개설하는 경우, 교육학 한 과목을 3개 강좌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4 공동교육과정에서 거점학교란 무엇인가요?

>>>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개설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거점학교는 공동교육과정 강좌 운영 및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 개설학교, 운영학교, 중심학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O5] 공동교육과정에서 참여학교란 무엇인가요?

>>>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를 말하며, 경우에 따라 소속 학교, 협력학교. 회원학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 🤇 Q6) 공동교육과정에서 관리교사란 무엇인가요?

>>>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공동교육과정 안내.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정리. 공동교육과정 운영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학생 수강 신청 관리, 학생 수업 참여 안내 및 지도, 수업 물품 관리, 운영 결과 보고 등을 담당합니다.

② Q7 공동교육과정에서 협력교사란 무엇인가요?

>>>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수업·평가·기록 및 행정업무(NEIS 등)를 지원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 (Q8)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대상은 누구인가요?

>>> 공동교육과정은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 간 교류 대상 과목 및 범위 지정 등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 타 시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도 운영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 Q9) 공동교육과정의 과목은 학기 단위로 편성하나요?

>>> 네.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학기 단위로 편성하며, 계절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여름방학은 1학기, 겨울방학은 2학기에 포함하여 편성합니다.

[] Q10 공동교육과정의 강좌 운영 시기 및 수업 시간은 언제인가요?

>>> 공동교육과정은 매 학기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일정을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학사일정과 가급적 동일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 일과시간 내에 운영을 기본으로 하나. 지역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방과 후 시간 또는 주말에도 운영 가능합니다.

Q11 공동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나요?

>>> 공동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교과 내 공통 과목이나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일부 일반 선택 과목들은 단위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공동교육과정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참여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 이외에는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이어야 합니다.

Q12)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의 학점은 어떻게 되나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보통 교과의 교양 교과목을 제외한 일반 선택 과목은 5±2학점, 교양 및 진로 선택 과목은 5±3학점으로 편성·운영합니다. 전문 교과 I, II 및 고시 외 과목의 학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보통 교과의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을 제외한 선택 과목은 4±1학점, 체육, 예술, 교양 교과(군) 선택 과목은 3±1학점, 일부 과목(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생애 설계와 자립)은 1~2학점으로 편성·운영합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선택 과목((표6)), 전문교과, 고시 외 과목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편성합니다.

Q13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특목고 및 특성화고에서 편성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문 교과 I, II 과목을 일반고에서 개설할 때는 해당 과목을 보통 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일반고 학생이 참여하는 과목을 특목고(또는 특성화고)에서 개설할 때도 해당 과목을 보통 교과 중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운영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거점학교의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에 맞게 공동교육과정 과목을 편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고 학생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학교 유형의 과목 편성 기준을 준수하므로, 특성화고에서 전문교과 내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문교과로 편성합니다. 한편, 거점학교가 일반고 또는 특목고인 경우 전문교과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합니다.



(Q14) 공동교육과정 강좌별 수강 인원은 몇 명인가요?

>>>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내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업 참여 활성화 등 수업의 질 관리를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O15 한 강좌에 참여하는 수강생 전원이 거점학교가 아닌 1개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단. 공동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학교와 참여학교가 서로 달라야 하며, 교과 순회교사 활용 및 강사 채용 상의 어려움, 학교 내 소인수·심화 과목 개설의 어려움 등 참여학교의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괴목 개설 전 소속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16)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이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 수의 제한이 있나요?

>>> 네. 제한이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 1인당 수강 학점 수는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최대 6학점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정규 일과시간 내 개설 강좌는 학기당 최대 수강 학점 수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정규 일과시간 내·외를 모두 포함하여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에 개설된 과목은 학기당 2개 과목 이내로 이수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Q17] 학생이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위해 신청 가능한 과목 수의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해도 강좌별 최대 수강 인원 제한 및 수강생 선정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수강 신청 과목 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들은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수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들은 학기당 2개 이내의 과목 이수 가능, Q16 참고)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개설된 동일 과목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Q18 학생이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동교육과정은 소속 학교 내 교육과정으로 개설되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학생은 과목을 중복 이수하지 않도록 수강 신청 전 소속 학교의 교육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들은 기초 교과 영역의 이수 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 학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의 경우, 국어·수학·영어 교과의 이수 학점 총합이 81학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이수 학점의 5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선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Q19 강좌별 모집 인원수보다 많은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모집 인원 수보다 많은 학생이 신청한 경우, 동일 과목 강좌의 추가 개설을 권장합니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거점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수강생 선정 관련 기준에 따라 수강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 수강 학생 모집 전 수강생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전 공지하는 등 공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Q20 수강생의 출결 및 성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수강 학생의 일별·월별 출결 현황 및 학기말 성적 일람표 등의 자료를 학교 간 NEIS 전송 기능(또는 공문)으로 참여학교로 송부하고, 참여학교는 송부된 자료를 확인하고 반영합니다. 이때 3학년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학교생활기록부 마감 기한 내에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21) 공동교육과정 과목 이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정규 일과시간 내 개설 강좌의 경우 소속 학교의 출결 상황과 합산하여 관리하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기준(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을 동일 적용합니다. 또한 정규 일과시간 외 개설 강좌의 경우 수업일수는 수업시수로 대체하여 적용하고, 수업 시수의 2/3이상 출석을 이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업 성취율(40% 이상)과 과목출석률(실제 수업 횟수의 2/3이상 출석)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Q22) 학생이 학교 행사 참여로 공동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학생의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으로 인해 공동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참여학교에서 증빙서류를 공문으로 거점학교에 제출하고, 수업교사(강사)는 일별 출석부의 출결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Q23) 출석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거점학교 출결 인정에 따른 가족, 친인척 상고
 - 소속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행사 활동(대회, 체험학습 등) 기간에 공동교육과정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 소속 학교 정기고사 기간에 공동교육과정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 소속 학교의 대표로 출전하는 대회 참가
 - 법정 감염병에 의한 결석 등

(Q24) 수강생의 출결 관련 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출석인정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연한은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5 평가는 어떤 절차로 운영해야 하나요?

>>> 학교 내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시도교육청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거점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과목별 평가계획을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담당자, 수업교사(강사), 협력교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수립하고, 거점학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Q26 지필평가는 언제, 어디에서 실시하나요?

>>> 지필평가는 거점학교 계획 및 시행 방법에 따라 동일한 일시에 한 곳에 모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리, 일정, 장소 섭외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학교에서 시행 가능합니다. 또한 지필평가 시행 일정, 방법 등은 거점학교 및 참여학교 담당자, 수업교사(강사), 협력교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7) 공동교육과정 과목별 평가를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시행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학교 내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한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Q28 동일 과목을 A, B반으로 나누어 2개 강좌로 개설하고, 담당 교사가 다른 경우 성적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동일한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동일한 교과·과목이고 학점, 수강 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A, B반의 수강 학생 모두를 '수강자 수'로 하여 성적을 산출해야 합니다.

Q29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가요?

>>> 거점학교의 학교 내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동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로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운영 개요, 담당 교사(강사), 강사료, 교과서 선정, 예산 집행 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30 공동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계획은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거점학교의 학교 내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차시별 수업 지도 계획, 평가 계획 등에 대한 결재가 필요하며, 특히 평가 계획은 거점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합니다.